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·구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 (※고딕체: 오픈넷의 수정요구)
제44조의2(정보의 삭제요청 등)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(이하 "삭제등"이라 한다)를 요청할 수 있다.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·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.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	제44조의2(임시조치 등)①----------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(이하 "권리주장자"라 한다)는----------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----------.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(이하 "임시조치"라 한다)를 **함과 할 수 있다.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그와** 동시에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권리주장자 및 정보게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정보게

하여야 한다.	재자에게 통지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게시판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. 1. 임시조치의 사실 및 기간 2. 이의제기의 절차, 방법 및 효과 3. 이의제기시 분쟁조정에 회부된다는 사실 4. 분쟁조정의 절차 및 효과
③(생략)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(이하 "임시조치"라 한다)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.	(제8항으로 이동)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임시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반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④ 제2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로 한다. 다만, 제5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분쟁조정절차가 종료하는 날까지 임시조치 기간이 연장된다. ⑤ 정보게재자는 제4항에 따른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 다만, 그 기간 안에 임시조치에 대한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정보통신

	서비스 제공자는 임시조치 기간 만료 후 60일이 지나 해당 정보를 삭제할 수 있다. ⑥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제44조의12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이 있는 것으로 보며, 권리주장자를 신청인으로 하고 상대방인 정보게재자를 피신청인으로 한다.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지체 없이 관련 자료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. **이와 동시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임시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.** ⑦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지체 없이 권리주장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1.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 사실 2. 분쟁조정에 회부된 사실 3. 분쟁조정의 절차 및 효과
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·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.	⑧ (현행 제3항과 같음)
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·관리하는 정보통신	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삭제, 반박내용의 게재 및 임시

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.	조치 등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·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. ⑩ ----------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치 및 제5항에 따라 삭제한 경우 이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<신 설>	제44조의12(임시조치 직권조정) ① 제44조의2 제6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임시조치의 해제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(이하 “직권조정결정”이라 한다)을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그 결정은 조정신청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. ② 직권조정결정서에는 주문(主文)과 결정 이유를 적고 이에 관여한 위원 전원이 기명·날인하여야 하며, 그 정본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.

	③ 직권조정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불복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분쟁조정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 ~~**이 경우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하며,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임시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.**~~ ④ 제3항에 따라 직권조정결정에 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이 있은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며, 권리주장자를 원고로 하고 상대방인 정보게재자를 피고로 한다.